

IMO 제16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제IMO 제16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
(The 16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 기간/장소 : 2008. 6. 2 ~ 6 (5일간)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주임검사원 강길보

II. 의제목차

- 의제1. 의제의 채택
- 의제2. IMO 타 기구의 결정 사항
- 의제3. 기국의 협약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부의 책임
- 의제4. MARPOL 73/78에 따른 강제보고
- 의제5. 항내수용시설 및 관련 의제에 대한 검토
- 의제6.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의제7. 항만국통제(PSC) 활동의 조화
(Harmonization)
- 의제8. 2004 벨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
vention)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의 개발
- 의제9. 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항만국통제
- 의제10. IMO 규정 이행상 문제점 종합 분석
- 의제11.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의 검토
- 의제12.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s)에
대한 검토
- 의제13. IUU(불법, 미규제, 미보고) 어업에 관한 사항
및 Res. A.925(22)의 시행에 대한 검토
- 의제14.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 의제15. 차기 회의(FSI 17)의 작업계획 및 의제

- 의제16. 2009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제17. 기타사항(Any other business)
- 의제18. 위원회에 보고(Report to the Committee)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타 기구의 결정사항

- 전문위원회는 MEPC 56, MSC 83, LEG 93, C/ES 21, A 25, FP 52, BLG 12, DE 51, STW 39, COMSAR 12, MEPC 57 및 MSC 84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동 회기와 관련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의제 논의시 동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 (1) “회원국에서의 비강제 규정 채택 및 이행에 관한 정보” 최신화
- (2) 제정 또는 개정된 강제 협약의 발효 시점에서, 관련 증서의 대체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개발
- (3) 여객선의 선저 검사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 (4) 아국에서 제출(MSC 83/15/3)한 “AIS 장비의 정기적 검사를 위한 SOLAS 개정 제안” 검토
- (5) FPSO 및 FSU의 IMO 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 (6)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통합 감사 기록 요약 보고서(A 25/8/2) 검토
- (7) SOLAS 및 MARPOL 협약 적용 관련, 옵션 선박의 “건조 계약일” 관련사항 검토

의제 3 기국의 협약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부의 책임

1. FSI 16/3(프랑스) : 통신작업반 보고서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에서는 통신작업반의 논의 결과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의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항만국통제 점검 자료와 해양사고 자료의 상관관계 및 통합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음
 - 아래와 같이 연구의 목적 및 체계를 확립하고, 세계해사대학(WMU)을 포함.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행 관련 제안서를 FSI 17에 제출받아 연구 기관 선정 및 관련사항을 진행하기로 함

[연구의 목적 및 체계]

- (1) PSC MoU간 상이한 Targeting System에 관한 비교
- (2) PSC와 사고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검토
- (3) 연구에 이용될 해양사고 자료의 식별 및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완성도에 대한 평가 수행
- (4) 해양사고 자료와 항만국통제 활동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 (5) 해양사고 분석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사고 정보를 어떻게 취합할지 결정
- (6) 인적 요소를 포함한 “Chance factor” 관련 영향 측정

2. FSI 16/3/1(사무국) : 코드, 권고, 지침 및 비강제 규정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코드, 권고, 지침 등의 비강제 규정” 목록에 대해, 유용한 자료이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전문위원회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선박에 적용하는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요건, 권고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과 관련한 GISIS 모듈이 완성되면 비강제 규정 관련 사항도 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관점에서 각 회원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비강제 규정 이행 현

황을 모듈 상에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의제 4 | MARPOL 73/78에 따른 강제보고

1. FSI 16/4(사무국) : 2006년도 MARPOL 73/78에 따른 강제 보고서 및 결함 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2006년 MARPOL 73/78 협약 당사국 34개국에서 보고한 강제보고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예년에 비하여 보고율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정하였음
- 또한 FSI 16에서는 FSI 15에서 사무국에 요청한 “MARPOL 73/78 협약 당사국을 위해 강제 보고 요건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GISIS의 관련 체계 내에서 MEPC/Circ. 318이 요구하는 정보를 얻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보고한 아래 사항을 주목하였음
 - GISIS의 관련 체계 내에서 MEPC/Circ. 318이 요구하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예정임
 - 최근에 MEPC/Circ.318 Part 3 “Annual Enforcement Report on Reception Facilities”의 보고 요건은 GISIS 모듈을 통해 정보 추출이 가능해졌음
- 상기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는, MEPC에서 승인이 된다면 2008년도 MARPOL 73/78에 따른 강제 보고서부터 MEPC/Circ. 318 Part 3 “Annual Enforcement Report on Reception Facilities”의 보고 요건을 사무국에서 GISIS 모듈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당사국 정부는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데 동의함
- 마지막으로, 관련사항의 지속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무국에 MARPOL 협약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에 관한 FSI 16/4에 대한 최신화된 자료를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의제 5 | 항내 수용 시설 및 관련 의제에 대한 검토

1. FSI 16/5(포르투갈) : 부적절한 항내 수용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2. FSI 16/5/1(INTERTANKO 및 INTER-CARGO) :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보고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Action Plan과 관련한 통신작업반의 검토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였음

의제 6 | 해양사고 통계 및 조사

1. FSI/16/6(노르웨이) : 해양사고분석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2. FSI/16/6/1(사무국) :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목록

3. FSI/16/6/2(크로아티아, 터키) : 『Und Adriyatik』로로화물선 화재관련정보

4. FSI/16/6/3(영국) : 침몰선 항해기록장치 회수

5. MSC Napoli 사고 분석보고서 (영국 MAIB)

회의결과

- 해양사고 분석보고서 검토를 통해 공통의 체계적인 조사방법의 개발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
- 선원에게 제공되는 교훈에 대한 검토 후 수정안 마련하여 웹사이트 공포를 위해 전문위원회에 승인 요청
- 사고분석에 대해 도선사의 적절한 승하선이 사고예방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 절차, 유지보수, 인력배치 등 사고원인에 대한 도형화가 필요한 점에 공감

- 사고보고서의 제출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초안을 마련하여 승인 요청
- 피로와 졸음이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보고서에 대해 각국에 동 사항을 주지시키고 인적 과실로 판명될시 감소방안에 대한 고려를 촉구
- IMO 회람지에 사용하는 용어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 필요
- MSC Napoli에 관해 미신고, 인적요소, 선체구조의 허용한계 등의 사고요소 검토
- 로로선 사고에 관해 화물구역의 방화구조, 고정식 소화장치, 탈출로 등에 대한 화재방지 소위원회 정보제공 동의
- VDR에 성능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개선사항의 필요성 공감하고 차기 회의시 각국에서 개선 사항 제출 요청
- 현행 사고 분석절차에 대한 개선점 발굴과 관련 통신작업반에서 진행 요청
- 사고발생과 경향에 대한 통계 개선 방법은 GISIS의 개선 완료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

의제 7 | 항만국통제(PSC) 활동에 관한 조화

1. 각 MoU별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지역 PSC MoU의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MoU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 연차보고서의 계속적인 제출을 요청함
- 또한 각 MoU에서 제출되는 연차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발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여 논의토록 결정하였음
 - 통합적인 PSC 연차보고서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고서의 공통 형식 개발
 - 지속적이고 또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확립

- 두 개 이상의 PSC MoU에 속해 있는 동일 국가에 대해, 각 MoU에서의 “Detention rate”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연구

대한 MEPC 58 결정사항을 참조하여 지침 개발을 논의하도록 결정하였음

2. 각 MoU별 집중 점검 제도(CIC) 시행 결과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 전 세계 MoU 통합의 집중점검캠페인(CIC) 시행을 제안한 이집트 문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각 지역 PSC MoU의 CIC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통합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각 MoU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음
- 또한 각 MoU의 ISM CIC 이행 결과를 정리하여, “인적요소에 대한 MSC/MEPC 합동 작업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MoU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의제 8	2004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의 개발
-------------	--

1. FSI 16/8(Paris MoU) : 2004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에 따른 항만국 통제 지침의 개발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Paris MoU에서 승인된 지침이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였으나, 미국, 파나마 및 캐나다 등에서는 동 항만국통제(PSC) 지침의 근본이 되는 “선박 평형수 샘플링 관련 지침(G2)”이 MEPC 58에서 최종 검토 예정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항만국통제(PSC) 지침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제안하였음
-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BWM 협약 관련 항만국통제(PSC) 지침 개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항만국통제(PSC) 활동의 조화” 관련 의제 하에 구성된 통신작업반에서 “선박 평형수 샘플링 관련 지침(G2)”에

의제 9	선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	-------------------------

1. FSI 16/9(사무국) : STW 39 회의결과 및 관련사항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에서는 STW 39의 결정사항에 대한 MSC의 검토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또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에 대한 항만국 및 기국 관련 지침 채택과 관련한 회의가 2008.10.15~10.26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상기 회의의 결과가 나온 이후인 FSI 17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의제 10	IMO 규정 이해상 문제점 종합 분석
--------------	----------------------

회의결과

- 동 사항 관련 FSI 16에서의 제출 문서는 없었으며, 사무국으로부터 61개의 initial SAFs 및 일부 updated SAFs가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 또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5년 동안 제출 문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전문위원회 의제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피력되었으나 통합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의제 11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의 검토
--------------	------------------------------------

1.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97(25))의 검토

회의결과

- 본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작업반에서는 검사 지침을 보다 시기적절(1년마다 MSC 또는

MEPC에서 개정(안) 채택)하게 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지침 개정 및 채택 관련 절차”를 논의하였으나, IMO 업무 절차 등 관련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

- 또한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 지침”에 대해, 통신작업반(CG)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통신작업반의 검토 사항을 일반적으로 승인함
 - AIS 검사 관련 5.11항과 5.12항은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함
 - AFS 협약과 관련하여, 검사 지침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분리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FSI 16 작업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 지침의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최종(안) 작성을 위해 통신작업반(프랑스, 의장 : Mr J. Fauduet)을 설립 하였음. 해당 통신작업반에서는 강제협약이 행코드의 개정 및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개정, 두 항목을 동시에 다루게 될 것임

2. 제정 또는 개정된 강제 협약의 발효 시점에서, 관련 증서의 대체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개발

회의결과

- 작업반(WG 2)에서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충분치 못하므로 통신작업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FSI 17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3. “AIS 장비의 정기적 검사를 위한 SOLAS 개정 제안” 검토

회의결과

- AIS 장비의 정기적 검사를 위한 SOLAS 개정 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는 상세 기술적인 검토를 작업반에서 논의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회의장 논의과정에서 그리스, 파나마, 사이프러스 등은 MSC 83에서와 같이 SOLAS V장에 규정된 많은 전자장비에 대하여 특정한 연차검사를 요구하는 규정

이 없음을 예로 들고 SOLAS 개정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동 사안에 대하여 작업반에서 논의 결과 “많은 회원국에서 AIS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시점에서 SOLAS 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상기 결과를 MSC 85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4. SOLAS 및 MARPOL 협약 적용 관련, 옵션 선박의 “건조 계약일” 관련사항 검토

회의결과

- 상기 관련사항에 대한 작업반(WG 2)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조계약일 관련 MSC 회람 초안이 작성되었음. 전문위원회는 상기 결과를 MSC 85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5. 여객선의 선저 검사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 통신작업반에서는 MSC 83의 요청에 따라 “여객선의 Dry Docking 및 선체외판 검사(입거검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바하마와 CLIA의 제안
 - 선령 15년 미만의 로로 여객선을 제외한 여객선의 입거검사를 5년에 1번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 관련사항의 전문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 전문위원회는 MSC 84에서의 결정사항을 주목하고, DE에서의 기술적인 요건에 대한 평가가 끝난 이후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음

의제 12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s)에 대한 검토

1. FSI 16/12(IACS) :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 SC 171 - Interpretation of the term “first survey”의 개정

회의결과

- 작업반에서는 기존의 “first survey”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SOLAS 각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MSC/Circ.1141에 대해, SOALS 각 규정을 삭제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작성하였음

- 전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first survey”에 대한 해석 내용을 담은 Circ.1141의 개정(안)을 작성하고, MSC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음
[First survey에 대한 해석]

해당 요건의 발효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검사,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주관청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검사

의제 13	IUU(불법, 미규제, 미보고) 어업에 관한 사항 및 결의문 A.925(22)의 시행에 대한 검토
--------------	--

1. FSI 16/13(사무국) : IUU(불법, 미규제, 미보고) 어업에 관한 사항 및 Res. A.925(22)의 시행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 어선부분 및 IUU어업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FAO/IMO의 공동의 노력을 지시함
 - 항만국 통제 조치
 - 전세계 어선에 대한 포괄적 기록
 - 어선에 대한 선박추적시스템(VMS) 개발
 - ISM Code 및 IMO 회원국 감사를 고려한 어선의 관리 기준 개발
 - '07년 어선원 노동 협약의 발효에 따른 PSC 지침
 - 제 3차 IMO/FAO 합동작업반 개최(3~5년 사이)
- '08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후 FAO/ IMO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FSI 및 관련 전문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키로 함
-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및 어선안전원협약(STCW-F)의 조기발효를 위하여 관련 회원국에 기준을 촉구함

의제 14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검토
--------------	--------------------

1. IMO 강제협약이행 코드(Res. A.996(25)의 개정 검토

회의결과

- 상기와 같은 논의결과에 따라 “강제협약이행 코드의 지속적인 검토” 의제는 FSI 16의 새로운 의제로 편성되었으며, FSI 16에서는 FSI 15에서 구성한 통신작업반의 작업 결과-FSI 15 이후에 채택된 새로운 규정(2010년 발효 예정)을 포함하여 강제협약이행코드의 개정(안)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코드 개정을 검토하였음
- 전문위원회에서는 또한 상기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코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통신작업반(프랑스, 의장 : Mr. J. Fauduet)을 설립하였음. 해당 통신작업반에서는 강제협약이행코드의 개정 및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개정, 두 항목을 동시에 다루게 될 것임
- 마지막으로 전문위원회는 감사국 또는 감사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협약 제·개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의서 목록을 코드 Annex 7로 신설하였음

2.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관련, 통합 감사 기록 요약 보고서(A 25/8/2) 검토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상기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의 검토 목적은 각 국에서의 IMO 강제 규정 이행 관련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구에서 이행하고 있는 관련 체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5개의 검토 목적을 정하였음
 - IMO 강제협약 이행 관련 어려움 및 긍정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
 - 감사 결과에 바탕한 learning process 확립
 - IMO 강제 규정 이행 관련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구에서 이행하고 있는 관련 체계의 효과에 대한 평가
 - IMO 강제 규정 이행을 위한 특정 지침 또는

통일해석 개발

-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술협력 프로그램 확립의 필요성 검토
- 상기의 결정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는 “통합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설립하고, 상기 검토 목적에 바탕한 분석 방법론 개발을 요청하였음

3. 기타사항 - FPSO 및 FSU의 IMO 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현행의 규정이 FPSO 및 FSU의 안전 관련 부분을 적절히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작업계획으로의 선정이 필요치 않음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또한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는 OCIMF에서 새롭게 개발된 “Competency Assurance Guidelines for FPSOs”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MSC 85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전문위원회의 상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FPSOs 및 FSU에 협약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기 국가에 대하여는 상기 관련 MSC 85에 새로운 작업계획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의제 15 차기 회의(FSI 17)의 작업계획 및 의제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해상에서 구조된 인명의 보호”, “인정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 대한 코드의 개발” 관련 MSC 84 결정사항 및 일본에서 제안한 “Code of conduct during demonstrations/campaigns against ships in high seas” 관련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차기

회의의 작업 계획 및 의제(FSI 16/WP.5)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음

○ 차기 회의 작업반(WG) 또는 초안작업반(DG) 구성 계획

- WG 1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WG 2 :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이행 코드의 검토
- WG 3 : 통합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 검토
- DG 1 : 항만국통제(PSC) 조화 및 2004 BWM 협약에 따른 PSC 지침의 개발

○ 통신작업반 구성

-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 항만국통제(PSC) 활동 조화
- HSSC에 따른 검사 지침 및 IMO 강제협약이행 코드의 검토, 통합 감사결과 요약 보고서 검토
- 항내 수용시설 관련 사항 검토

○ 차기회의(FSI 17) 일정 : 2009. 4. 20 ~ 4. 24, IMO 본부

의제 16 2009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회의결과

- Mrs. Tatjana, Krilic(Croatia)을 의장으로 재선출하고, 부의장으로 Capt. Dwain Hutchinson (Bahamas)를 선출함

의제 17 기타사항 (Any other business)

1. FSI 16/17(사무국) : 전세계 통합정보 시스템 (GISIS)

회의결과

- GISIS는 2005년 중순, 그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8개 모듈(해상 보안, 해양 사고, 인정 기관(RO), 항만 수용 시설, 현상 검사(CAS), 해양오염방지설비, 회원국 연락처 및 선박 정보)이 운영중임